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695
----------	------

발의연월일 : 2017. 8. 25.

발의자 : 유은혜 · 정성호 · 박정

김민기 · 백혜련 · 노웅래

홍의락 · 김성수 · 인재근

민홍철 · 김철민 · 신창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에게 각각 지급하던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바우처를 2014년에 하나로 통합하여 통합문화 이용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됐음.

이에 「문화예술진흥법」 상의 문화이용권의 정의를 여행 및 체육 활동까지 영위할 수 있는 광의의 문화이용권으로 변경하여 문화이용권 제도 통합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4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이용할”을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 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 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u>이용할</u>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①-----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 ----- <u>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 할</u> ----- ----- -----.</p>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